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기헌·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80 발의연월일: 2024. 11. 12.

발 의 자:송기헌・박정하・강명구

강훈식 • 구자근 • 김태년

박대출 • 박덕흠 • 박수민

복기왕 · 서미화 · 송석준

이기헌 · 주호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토지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준하게 대우하도록 사무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대도시인 광역시·도 외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면적 1천제 곱킬로미터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·군·구는 단 16곳이며 이 중 강원도가 8곳, 경상북도 7곳, 전라남도 1곳으로 법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현행 토지 면적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를 배제하는 기준임.

이에 현행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여 중소도시 주민의 삶이 대도시에 준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사무 특례 지위확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1천제곱킬로미터"를 "500제곱킬로미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8조(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)	제58조(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)		
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다	①	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
하는 대도시의 행정・재정 운			
영 및 지도·감독에 대해서는			
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			
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			
둘 수 있다. 다만, 인구 30만			
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			
이 <u>1천제곱킬로미터</u> 이상인 지	<u>500</u> 제곱킬로미터		
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			
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.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